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2. 5.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서민우 의원 등 6명(박종길, 김인호, 이신자, 이영빈, 김귀화)
- 발의일자: 2020. 1. 15.
- 회부일자: 2020. 1. 23.
- 검토기간: 2020. 1. 28. ~ 1. 31.

2. 개정이유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 반려견 놀이터의 정의 신설
- 안 제5조제3항 반려견 소유자 등의 의무 추가
- 안 제9조, 안 제10조 동물의 관리,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 신설
- 안 제11조, 안 제12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사항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 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3조, 제4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호)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1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중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0. 1. 15. ~ 2020. 1. 28.)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으로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집행부의 수정 의견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신설 예정인 「가슴줄의 길이 제한과 공동주택 등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호, 제5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 외 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후 방사기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정을 반영함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수정 의견

- 상위법령의 중복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및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등에 규정된 내용 및 아직 공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호(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와 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3항(동물보호법 제41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임

➡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호, 제5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중(입법 예고: 2019.9.11.- 2019.10.21.)이며, 부칙 제1조에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개정안(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 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8조)

《 조례안 제10조 》	《 고시 규정 》
② ----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 할 수 있다. -----	제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 검토 의견 》 - 조례안 제10조 제2항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기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할 수 있다.

【 조문별 집행부 수정내용 】

조례안	수정(안)	사 유
제9조(동물의 관리 등)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2m 이내로 한다. 3.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동물관리 등) 제2호, 제3호, 제5호 삭제	1. 제3호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규정한 내용으로 삭제 2. 제2호, 제5호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및 아직 공포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삭제

조례안	수정(안)	사 유
<p>4.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p>		
<p>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기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p>	<p>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등) 제2항 삭제</p>	<p>「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6조 및 제8조에 규정한 내용과 상충함에 따라 삭제</p>
<p>제1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1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1항, 제3항 삭제</p>	<p>「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규정한 내용으로 삭제</p>

※ 참고자료: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2. 11.]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시행일 : 2020.3.21.] 제3조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1.]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시행 2016. 3.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고양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덧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성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시행 2016. 6.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 4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이수 수료증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 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활동) ① 명예감시원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은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동물소유자·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감시원은 업무수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위촉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 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9. 9.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동 물 복 지 정 책 팀)

법제처 심사 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설정(안 제12조제2~3항)

가. 제·개정 이유

- 반려견을 소유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길이’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반려견 소유자와 비반려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 동물복지와 타인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목줄의 길이를 정부차원에서 제시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 *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조례로 가감하여 설정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반려인도 일반국민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를 “핏볼테리어 및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로 한다

제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제3호”를 “법 제8조제5항 제4호”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등록대행자는 소유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방문한 경우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시 소유자 등에게 동물등록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m) 이내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시·도의 조례로 가감(加減)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을
“제3항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별표 9 제1호마목, 별표 10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호,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제2호라목1)마) 및 별표 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9 제2호라목2)나), 제2호라목2)바), 제2호사목6), 제2호아목마) 내지 아), 별표 10 제1호타목 및 제2호아목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